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683

2026. 2. 23.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6. 2. 23. 운영위원장

나. 상정의결

- 제3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6. 2. 23.)
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: 운영위원장 이동호 의원)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」가 제정됨에(2024.9.27.) 따라 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」에서 삭제된 조문 준용 오류를 정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“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」 제6조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11조”로 정정함. 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기　　타: 없음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6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7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: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위원회안)

의 안 번 호	683

제안연월일: 2026. 2. 23.
제 안 자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」가 제정됨에(2024.9.27.) 따라 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」에서 삭제된 조문 준용 오류를 정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○ “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」 제6조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11조”로 정정함. 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기 타: 없음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본문 중 “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」 제6조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11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상임위원장) ① (생 략)	제9조(상임위원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」 제6조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의장과 부의장 명칭은 상임위원장으로 보며, 같은 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	② ----------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11조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